

해외파견 및 대회보조 규정

제정 2016. 4. 1

경상북도 승인 2016. 4.27

개정 2016.12.23

개정 2017. 5.24

제1조(목적) 본회는 회원종목단체(이하 “종목단체”이라 칭함)에서 거행하는 각종 체육 행사를 적극 권장함을 목적으로 본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.

제2조(국제대회) 종목단체에서 각종 국제대회를 본도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한다.

국제대회(교환, 초청, 친선경기 포함) 1,000,000원정

제2조의2(생활체육 국제대회 유치 및 참가) ①종목단체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국제 대회 유치 및 참가(교류초청·파견)할 경우 사업보조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'17.5.24>

제3조(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) ①본회 종목단체가 전국규모대회를 본도에 유치할 경우 1,000,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.

단, 1년에 1회에 한 한다.

②전국 시·도대항 대회에 참가할 경우 1,000,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.

단, 1년에 1회에 한 한다.

제3조의2(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) ① 종목단체가 생활체육 전국규모대회를 본도에 유치할 경우 대회성격, 참가규모,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생활체육 전국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성격, 참가규모,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보조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'17.5.24>

제4조(해외파견비) <삭제 '16.12.23>

제5조 본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12.2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5.2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